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아래부터는 계약쌍방이라고 부른다)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 국제민용항공에 관한 협약의 계약국들로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적인 태양에 편의를 도모하고 민용항공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호상 관계를 발전시키며 두 나라 행정들 사이와 그를 지나는 국제항공로를 설정할때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1. 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면:

- 1) 술어 《항공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중국 민용항공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총국을, 혹은 쌍방의 경우에 이미 지적된 당국들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받은 임의의 기관을 의미한다.
- 2) 술어 《항공회사》는 국제항공로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임의의 항공수송기업소를 의미한다.
- 3) 술어 《지정된 항공회사》는 이 협정 제 3조에 따라 지정되고 승인된 항공회사를 의미한다.

원칙의 공개된 국제인권위원회 판례 결정의 의미를 의미한다

9) **출어 《결약》**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된

조약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약 조약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우편법을 수용한 조약이나
이기에는 대외인부의 기타 보조적인 통수를 제외한 조약
문구들과 그외의 조약들을 적용하는 조약을 의미한다.

8) **출어 《출입》**은 법적, 행정, 피난수용을 위하여 지부되는

법적사항을 의미한다.

입부문에서 주어지기 전 기간 그외의 행정기관의 운영의 수를
되는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조약은 행정기관의
② **결약된 조약의 관련사항**은 그외의 행정기관의 운영

의미한다.

입부문에서 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조약은 행정기관의
① **행정기관의 관련사항**은 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7) **출어 《출력》**은: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우편법을 신기나 부외우편법과는 다른 목적으로
6) **출어 《입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력》**은 법적, 행정,

문지나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5) **출어 《국제행동》**은 국제 이성의 국가행동의 공동공간

의미한다.

수용을 위하여 행정기관으로 수행되는 입의의 정기행동을
4) **출어 《행동》**은 법적, 행정, 외부 또는 우편법의 사외적

수용자유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상의 지권(특)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다수결에
 용 무죄으로 계약상대방의 행위에 있는 구제된 항의지권

(3) 민선, 헌선, 화북파 우편부도 면 부속수용을 신고 부의

(2) 비영양적인 무죄으로 우연시 지권한 행위에 부여한다.

(1) 계약상대방의 항의행위가 구제된 항의지권(특)을 부여
 계약상대방의 행위에 부여하지 않고 부여되게 한다.

권한을 가진다.

2. 이 항정의 구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지권한 항의행위는
 구제된 항의지권에서 항의된 항의를 승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항의행위, 《구제된 항의지권(특)》이라고 한다.

이런 항의행위와 항의지권행위가 서로 부딪는 각각 《항의권
 항의행위》가 있다. 이 항정의 지권한 항의행위를 계약상대방이 승인할 수
 의 지권한 항의행위가 구제된 항의지권(특)을 인정하여 승인할 수
 1. 계약상대방은 이 항정의 부속이 구제된 항의지권에서 계약상대방

제 2 조 권 제한 부속

2. 부속들은 이 항정의 불가분적 부속으로 된다.

들이 포함된다.

제 90 조 계약상대방이 체결한 범위에서 이 항정의 제 90 조
 조항과 관련된 인의의 부속의 항의의 인의의 수권은
 조항과 관련된 인의의 부속 또는 항의의 인의의 수권은

5. 지정되고 승인된 항공회사는 이 법령의 제 10 조와 제 11 조

의 규정조건들에 따라 지정된 공인된 비행시간표가 그 항로

를 위한 운영승인용 같다.
3 항의 규정조건들에 준하여 지정된 항공회사의 지정권이

4. 계약상대방의 항공당국은 지정용 결승권 이 조의 2 항의
지정된 항공회사의 항공당국에 필증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한 조건들을 준수할 자격이 있다는 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적으로 그리고 항의적으로 적용하는 범위 규정에 따라 지정

3. 계약당방의 항공당국은 국제항공운송공약에서 그 당국이 인가
용제권은 그 계약당방에 속한다.
2. 계약당방의 지정된 항공회사의 실제적인 소유권과 표의적인

용 가진다.
으로 하나의 항공회사를 계약상대방에 서면으로 지정할 권한

1. 계약당방은 규정된 항로지점에서 항의인 항로를 운영할 목적
을 가진다.
3 조 지정 및 승인

4. 계약당방의 지정된 항공회사가 계약상대방의 명도에 있는
용 되고 부의용수 있는 권한은 계약당방의 항공당국들 사이에

지정(들)에서 제 3 부에로 가거나 그로부의 오는 국제수송항
함의한다. (5 번째 수송자유권한)

3. 계약당방의 지정된 항공회사는 계약상대방의 명도에 있는
두 지점들 사이의 수송량을 나눌수 없다.

2.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은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포함하여 부하는 경우.

3) 양공회사가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

2) 양공회사가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하는 경우:

1)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조 권한의 취소, 정지 및 조건의 부합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양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양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양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의 1항의 양공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의 양공회사의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 중 "이 조의 1항의 전단 및 후단 중 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계약인방의 지정된 항목회사의 항목기에 실은 항목기상비
 기제, 예비부속품, 완공기소품, 연유, 기름(작동유포함)의
 공할유는 계약상대방의 계약당국의 승인하에서만 그 계약에
 부의용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국은 그러한 불지출을 계약

2. 계약인방의 지정된 항목회사가 혹은 그의 위인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되어오거나 그 계약에서 그러한 지정
 된 항목회사의 항목기에 실는 연유, 기름(작동유포함),
 공할유, 예비부속품, 상용기제외 항목기소품은 그것들을 실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에서 수행하는 도중구간에서 사용
 되더라도 그 계약에서 부의 되는 연유, 연료, 연사비, 기타 부의금
 이나 세금에서 면제된다.

1. 계약인방의 지정된 항목회사가 국제항공사로써 운영하
 는 항목기와 항목기상비기제, 예비부속품, 연유, 기름(작동유
 포함), 공할유의 항목기소품(소로품의 상당유료, 담보포함)은
 그것들이 다시 반출될때까지 항목기안에 남아있는 조건에서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도후항의 연료, 연사비, 기타 부의금
 이나 세금에서 면제된다.

제 5 조 관공회 기금 회칙의 적용

으로 되지 않는 한 그러한 권한들은 계약상대방의 항목당국의
 협의한후에만 행사한다. 항목당국들사이의 이러한 협의는
 제기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시작한다.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인권협약에
 항공의 안전을 해치는 비법적인 행위들을 진압할 때 마한 협약,
 함대 대안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용
 년 12월 16일 헤그에서 서명된 비법적인 항공기 범죄를 진압
 안에서 관행된 범죄의 인권의 기타 행위들에 관한 협약, 1970
 2. 특히 협약상항은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

으로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1. 협약상항은 국제법에 따르는 자기들의 권리의 의무들에
 주하여 비법적인 간섭 행위들로부터의 민용항공의 보안을 보장
 하기 위해 조상 지나는 의무들이 이 협약의 불가분리의 부분
 으로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제 8 조 항공 보안

1. 규정한 항로지점에서 운영되는 협약상항의 지정된 항공회사
 의 항공기는 국적과 등록표식을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해당한 문건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협약상항은 협약상항이 발행하였거나 표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기가 되지 않은 비행유물증명서, 증명서 및 자격증을
 유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그러나 협약상항은 자기의 편의에서 비법하도록 협약상항
 이 자기의 운민에게 발급한 증명서의 자격증의 인정을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제 7 조 증명서와 자격증

1. 계약상당은 계약상대방이 구체적인 수요, 항공기 혹은 그의 운영에 관한 불이행에서 안전보장함에 대한 혐의를 인의의 시기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혐의는 그것을 요구한 당부의 30 일안으로 진행한다.

제 9 조 안전 안전

9. 계약상대방이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믿음만 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인방의 항공당부는 계약상대방의 항공당부에 즉시적인 혐의를 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가 제기된 당부의 1 개월안에 당사자는 혐의에 도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 행정의 제 4 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된다. 비상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1 개월이 안되기 이전에 당사자를 취할 수도 있다.

8. 비법적인 민용항공기 발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험 혹은 그러한 항공기, 항공기에 관한 리적, 승조, 비행장이나 항공시설 등의 안전을 해치는 기타 비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당은 그러한 사건 혹은 사건위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통신 보장과 기타 해당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표시 명조한다.

7. 계약상당은 부검된 위험에 대응하는 파양성있는 보안조치들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이 제기하는 인의의 요구에 대하여 조의적인 안전을 제공한다.

4. 만일 그러한 정박장점명 혹은 요일부표의 정박장점명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된다면 점명용 진행하는 계약인방은 협약의 제33조에 따라 양공기 혹은 그 양공기승조의 승조원이나 자객승을 발원하고 표명용은 원수조건설 혹은 그 양공기가 승원용 진행하게 되는 원수조건설이 협약에 따라 건설된 최소 정박장의 일치하지 못하거나 적다한 결정을 내린다.

3. 협약의 제33조에서 언급된 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의 점명으로 오거나 가는 항로상에서 항로회사들이나 혹은 계약인방의 항로회사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인의의 양공기 단 계약상대방의 점명안에 있는 동안 양공기승원에서 부양하게 지인방이 없이 양공기의 내부의 외부에서 양공기와 승조의 승조원의 표명, 그리고 양공기와 그의 기계들의 명백한 상해를 확인 (이 조에서는 《정박장점명》이라고 한다)하기 위한 점명용 계약상대방의 위임을 받은 대표표명부의 받게 된다.

2. 만일 그러한 항의가 진행되면 계약인방이 그 당시 협약에 준하여 계약상대방에서 건설된 최소표명부의 최소한 일치되는 안전표명용 인의의 분야에서 표명적으로 유지하고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원하면 계약인방은 계약상대방에 나란한 원상복구와 그러한 최소표명용에 일치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데복구와 그리고 계약상대방이 적절한 시정대책을 취할 것을 물지한다. 계약상대방에서 15 인안으로 혹은 합의될수 있는 그 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해당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항정의 제4조를 적용하는 근거로 된다.

7. 우의 (2)항 또는 (6)항에 따르면 계약당방의 인의의 불응은 그러한 불응을 진행할 근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중지된다.

시정 권한을 가진다.

합유회사 또는 합유회사들에 대한 운영승인용 권지 혹은 권정 권수권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계약당방은 계약당방의 합유회사운영의 안전을 위하여 주식보인 도록을 철회하는 것이 적당할 경우 권한을 가진 권지, 권의 혹은 기타 권파에 따라, 계약당방이 적당할 때면 보인주권의 적당할 경우의 권지, 권지 권한을 내린다.

5. 우의 (3)항에 관하여 계약당방의 합유회사 또는 합유회사들이 운영하거나 그 합유회사의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적당할 경우 권지 권한을 가진 권지, 권의 혹은 기타 권파에 따라, 계약당방은 권지 권한을 가진 권지, 권의 혹은 기타 권파에 따라, 계약당방이 적당할 때면 보인주권의 적당할 경우의 권지, 권지 권한을 내린다.

우의 (1)항:

(1) 계약에 관하여 당사 결정되어 있는 안전표준들에 대한 표적적인 유지 및 진행에 관하여 있다는 생각

한 우의 (1)항:

(1) 합유기 혹은 합유기의 운영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 결정되어 있는 최소표준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

2. 계약총량의 변동에 있는 계약상대방의 지정된 항목회사의 대표부선원들은 인의의 계약일방의 공민이 될수 있다. 인원수 는 계약총량의 항목당구들이 호상성의 기초하여 결정한다.

1. 지정된 항목회사의 항목당구들이 공민이 되기 위하여 계약 일방의 지정된 항목회사는 호상성의 기초하여 계약상대방의 변동에 있는 지정된 항목회사의 지정된 항목당구들이 공민이 될수 있다. 대표부선원들은 대표부가 위촉한 나라이서 실시되고 있는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11 조 [合同總額] 總額

2. 계약총량의 지정된 항목회사는 계약상대방의 해당 당국이 규정한 공적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상대방의 공화, 시정, 기술부사를 리용하며 대하여 지불한다. 그러한 항목은 부사한 시정나 부사들용 리용하며 대하여 국제항로를 운영한다 다른 나라이 항목회사가에 부피하는 항목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1. 계약총량은 자기책임안에서 계약상대방의 지정된 항목회사가 항목당구들이 공민이 되기 위하여는에 리용하도록 기본공화부 예외 공화용 지정할수며 그 항목회사에 항목당구들이 공민이 될수 있는 공신, 항행, 기상, 기타 부사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총량의 항목당구들이에 구체적으로 합의할수 있다.

제 10 조 [運輸人員의 權利와 義務]

수용을 구할수 있다.

따라 그 국가의 화폐 또는 인의의 자유권과 화폐권으로 그의 관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인의의 인원은 국가권과 구별되는
관한을 가진다. 계약법상의 지경권 양부의 수는 수용
므로, 자기의 내외인을 용하여 할수수용을 할수있을
함으로 따라 계약상대방의 행위로써 지경 또는 자기의 지경
6. 계약법상의 지경권 양부의 수는 계약상대방의 행위로 지경

하리고 한다면 계약상대방의 수권의를 받는다.

는 비행인 인의의 다른 나라 부속을 가진 수권권은 수용
지경권 양부의 수가 계약상대방의 행위로 용이오거나 나가
외사를 지경하는 계약법상의 유인권을 한다. 계약법상의
계약법상의 지경권 양부의 수가 지경권은 그의 한 양부
5. 계약상대방의 행위로 용이오거나 나가는 비행에 참가하는

공인인 원요한 행조와 권리를 보장한다.

양부외사의 대표부와 그 성원들에게 행조의 행조의 대표적인
4. 계약법상은 법조의 가능성을 다하여 계약상대방의 지경권

행부기, 식품, 기타 재산물을 보장한다.

양부외사가 자기의 행위로써 행조의 행조행조의 의무하게
양부외사의 대표부와 그 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3. 계약법상은 법조의 가능성을 다하여 계약상대방의 지경권

(2) 친박적인 양로들의 경제적 이용요구

(1) 양로가 용피하는 지역이 수용수요

부리의 수용수요

(1) 양로회사를 지경권 계약인방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로

우려는 다음과 같은 것의 존재하는 인적적인 원천에 의해서
 역시 그리고 부리우는 지역, 수질, 화물, 우편물수용을 위한
 많은 다른 부리의 필요에 있는 구상된 양로지점상의 지점을
 것을 인적적인 부제로 하여야 한다. 양로회사를 지경하지
 만부시키는의 충분한 우편물 양로적인 전제로서로 계약하는
 수용을 위하여 양로적인 양로지점으로 인정되는 수요를
 용량하지나 그 필요에 도해하는 지역, 수질, 화물, 우편물
 구조야 하여 양로회사를 지경권 계약인방의 필요에 의해서
 구상된 양로지점에서의 수요수요와 민적한 필요를
 3. 계약양로의 지경권 양로회사가 운영하는 양로적인 양로들은

지경권 양로회사의 이익을 고리한다.

운영하는 양로에 부담한 양함이 미치지 않도록 계약양로방의
 동일한 양로지점의 전부 혹은 그 일부분에서 계약양로방이
 2. 계약양로의 지경권 양로회사는 양로적인 양로들을 운영하는데서

가진다.

1. 계약양로의 지경권 양로회사는 구상된 양로지점에서의
 양로적인 양로들을 운영하는데서 양경하고 양로한 기회를

제 12 조 양로 규정

5. 계약방법의 지정된 항공회사가 합의할 수 없거나 공인이 계약방법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계약방법의

공인은 비준된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약방법의 항공당국들이 공인이 제출된 당초부의 30 인안

그 기간을 승인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앞에서 지적한 당국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3. 이렇게 합의된 임의의 공인은 그것을 적용하기 최소한 60 일

다른 항공회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공인한 항목의 전부 혹은 그의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2. 이 조의 1항에 지적한 공인들은 계약방법의 지정된 항공회사

한다.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

비용, 항로의 특성 그리고 다른 항공회사의 공인들을

지정된 항공회사가 결정하는 공인들은 운영원가, 합당한

1. 계약방법의 영역으로 오르는 수송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의

제 13 조 공인 제한

합리적으로 정한다.

공인들 시작하기 전에 계약방법의 항공당국들이 합의하여

4. 지정된 항공회사가 운영하게 될 능력의 수기는 합의된 항목

- 1. 계약양양은 피계, 손권, 화물수송의 관련하의 자기수 영의 액서 면 수입액서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자기수 영액당국 이 발표하는 공시판물로 인의의 자유권완성화제로 수급할 권한을 계약상대방의 지정된 항운회사에 준다.
- 2. 계약양양사이의 지불제도가 불합정액의 의하여 조정된다면 그러한 불합정액을 적용한다.

제 15 조 항운회사 수입금의 총금

계약양양의 항운양구들은 요구에 따라 지정된 항운회사들의 항운기름로 항의권 항로들에서 나르는 수송량과 관련된 정기적인 통계자료나 기타 그와 유사한 자료들을 조사 보장한다.

제 14 조 통계자료의 제공

- 6. 이 조의 규정조건들에 따라 지정된 항운회사들은 항운이 계정의기전까지 계속 기록을 가진다. 그러나 항운은 이 조항 에 의하여 기록을 상회하는년부터 12개월후에는 기록을 가지지 않는다.
- 항운양구들은 항상용 불한 항의권 항로들 항운기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7) 제양인방의 지명된 향공회사가 사고유지를 받도록
 1) 향공회 구조사안을 제시할 시 약하되:
 2) 회계부 손익계산서 및 장부 등을 제출하되:
 3) 향공회의 향공회의 신음 부패혐의 회계 부장 또는 회계장부 등을
 위하되:
 4)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되:
 5) 제양인방의 회계장부 향공회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그가
 회계장부 사고조사의 향공회 회계장부를

제 17 조 제 17 조 제 17 조

- 1. 제양인방의 지명된 향공회사가 제양인방의 회계장부
 2. 제양인방의 회계장부에 있는 제양인방의 지명된 향공회사의
 회계장부를 제양인방의 회계장부에 제출한다.
 3. 제양인방의 회계장부의 회계장부의 회계장부의 회계장부의
 수인은 제양인방의 회계장부의 회계장부의 회계장부의 회계장부의

제 16 조 2항의 규정

1. 이 법령은 1993년 11월 8일 두 정부들 사이에 체결된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대신한다.

2. 이 법령은 계약업권이 이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권한에 따르는 필요한 절차들을 리행하였다는 것을 의표각서로 계약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불기한 날부의 효력을 가진다.

제 21 조 효 령 발 생

계약업권은 임의의 시기에 이 법령을 폐기할 때 대한 자기의 결정을 계약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법령은 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효상 함의되며 폐기 통지가 취소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방 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후에 폐기된다.

제 20 조 폐 기

1. 계약상방은 협의 혹은 서신거래로 이 법령의 임의의 구성 조건들을 변경 혹은 수정한다.

2. 그렇게 함의된 임의의 변경은 의표각서의 교환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3. 이 법령의 부속에 대한 임의의 변경은 계약상방의 항공당국들 사이에 합의할 수도 있다.

제 19 조 수 정

장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농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농림부

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농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농림부

이 령서는 2008년 6월 17일 평양에서 주어, 조선어, 영이
로 2 부씩 작성되었다. 세 원본들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해석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 영문에 준한다.

3. 계약항목의 지정된 항목회사는 항목회사가 항목회사를 지정된 계약항목의 범위에서 시작 혹은 끝나는 조건에서 자기의 권한에 따라 임의의 항목이나 모든 항목들에서 규정된 항목지점에 있는 임의의 지정 혹은 지정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항목지	항목지점들	항목지	항목지
계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택하는 특정지점들	특이점, 신앙 그리고 선택 항목지점	항목지점의 조선 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선택 하는 지점들 하나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지정된 항목회사가 운영하는 임의의 항목의 항목지점은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항목지	항목지점들	항목지	항목지
계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택하는 지점들	항목지점 항목지점들	항목지점 항목지점들

1. 공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지정된 항목회사가 운영하는 임의의 항목의 항목지점은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2. 계약방법의 지정된 항목회사는 수송수요에 따라 규정된 항목(물)을 위한 신청은 복이도 항목기가 리복하기 표준인 3인전에 항목지점에서 표준항포(물)의 운영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항목회사의 지정된 항목회사는 수송수요에 따라 규정된 항목(물)을 위한 신청은 복이도 항목기가 리복하기 표준인 3인전에 계약방법의 항목양수에 제출한다. 그러한 항목(물)은 승인용 받은 조건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1. 지정된 항목회사 혹은 다른 항목회사가 계약방법의 영역으로, 영역으로부터 혹은 그를 용의하는 비정기항포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를 위한 신청은 계약방법의 항목양수에 제출될 수 있다. 구역에서 지정된 항목양수는 비정기항포운영부 관련된 자체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신청을 지원없이 처리한다. 신청은 제안된 비행항자보다 최소한 표준인 3인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행운영은 승인용 받은 조건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